

KCGS Report

제11권 2호 | 2021. 2.

● ESG 동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율적 도입 및 구성 행태
: 자산 2조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2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주총회 특징 및 안건 분석 7
- 탄소중립 시대 도래에 따른 ESG 경영 12

● Global News

- 美 나스닥, 상장사 이사회 다양성 의무화 규정 제출 21
- SASB, IFRS재단의 지속가능경영보고 협의문서에 대한 답변서 발표 23
- 코로나 시대의 주주총회 형태 2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율적 도입 및 구성 행태

- 자산 2조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오윤진*

- ▶ 본 보고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현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자산 2조 원 미만의 비금융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자율 도입 및 구성 행태를 분석함
- ▶ 최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자율 도입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에 따른 사후적인 실효성도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 한편,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의 확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대표이사 간의 독립성 확보가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서 요구됨

서론

- 사외이사는 감시와 감독의 역할을 이행하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기업의 전사적 전략에 부합 및 상응하는 전문성을 상당 수준 갖추어야 함
- 현행 상법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2009년 개정 시 도입)하고 있음
 - 상법 제542조의8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자산 2조 원 이상) 및 구성(과반수의 사외이사)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KCGS 사업본부 ESG평가팀 선임연구원, 02-6951-3706, shining5@cgs.or.kr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 조성하는 현상과 그와 관련된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법령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비금융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3개년(회계연도 2017~2019 기준) 동안의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의 자율 도입 및 구성 행태를 분석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율적 도입 및 구성 행태 분석

- **(도입 행태)**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의 수는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1> 참고)
- 자산 2조 원 미만의 비금융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0%를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자율 도입 현황 (자산 2조 미만 전체)

(단위: 개사)

	2017	2018	2019
도입	51 (8.9%)	60 (10.3%)	72 (12.2%)
미도입	520 (91.1%)	521 (89.7%)	517 (87.8%)
전체	571 (100%)	581 (100%)	589 (100%)

- **(구성 행태 1 - 사외이사 비율)** 자율 도입 기업들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최근 3년간 대동소이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고)
- 사외이사의 비율이 50% 이하(과반 미충족)인 기업의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약 20%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자율 도입 기업 5곳 중 1곳은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

(단위: 개사)

	2017	2018	2019
50% 이하	11 (21.6%)	10 (18.2%)	13 (18.6%)
50% 초과 ~ 75% 이하	31 (60.8%)	34 (61.8%)	43 (61.4%)
75% 초과 ~ 100% 이하	9 (17.6%)	11 (20.0%)	14 (20.0%)
전체	51 (100%)	55 (100%)	70 (10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공시가 불완전한 경우 구성 행태 분석에서 제외함 (2018년 5사, 2019년 2사)

- **(구성 행태 2 - 대표이사 참여 여부)** 자율 도입 기업 중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최근 3년간 모두 5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고)
- 경영진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율 도입 기업 2곳 중 1곳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참여 여부

(단위: 개사)

	2017	2018	2019
참여	29 (56.9%)	28 (50.9%)	39 (55.7%)
미참여	22 (43.1%)	27 (49.1%)	31 (44.3%)
전체	51 (100%)	55 (100%)	70 (10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공시가 불완전한 경우 구성 행태 분석에서 제외함 (2018년 5사, 2019년 2사)

- **(구성 행태 3 - 위원장 사외이사 여부)** 자율 도입 기업 중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기업의 비중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4〉 참고)
- 2019년 기준으로 자율 도입 기업의 45.7%가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표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해당 여부

(단위: 개사)

	2017	2018	2019
해당	13 (25.5%)	17 (30.9%)	32 (45.7%)
미해당	38 (74.5%)	38 (69.1%)	38 (54.3%)
전체	51 (100%)	55 (100%)	70 (10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공시가 불완전한 경우 구성 행태 분석에서 제외함 (2018년 5사, 2019년 2사)

- **(사후적 실효성 분석 1 -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 성격 및 여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율 도입 그룹의 경우(최근 3년 평균 92.4%) 의무 도입 그룹(최근 3년 평균 95.9%)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미도입 그룹(최근 3년 평균 85.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5〉 참고)
- 또한, 최근 3개년 동안 자율 도입 그룹이 미도입 그룹보다 적게는 약 5%p, 많게는 약 10%p 수준으로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의 기업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사후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5〉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평균 (그룹별 비교)

(단위: %)

	2017	2018	2019
2조 이상 의무 도입	94.9%	95.9%	96.9%
2조 미만 자율 도입	93.9%	91.2%	92.1%
2조 미만 미도입	83.8%	84.9%	87.2%

* 이사회 출석률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 횟수)/(선임 혹은 퇴임 시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가 연중 참석 가능한 이사회 전체 횟수)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기준이 반영된 KCGS 지배구조 평가 관련 DB 상의 이사회 출석률 수치를 기반으로 각 그룹의 평균을 계산하였음

- (사후적 실효성 분석 2 - 사외이사의 반대/수정의견 제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 혹은 수정의견을 제시한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앞선 경우와 유사하게 자율 도입 그룹(최근 3년 평균 6.23%)은 의무 도입 그룹(최근 3년 평균 9.09%)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미도입 그룹(최근 3년 평균 0.96%)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6〉 참고)
- 또한, 최근 3개년 동안 자율 도입 그룹이 미도입 그룹보다 약 3~7%p 수준으로 매년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앞선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의 경우와 상당 부분 유사한 패턴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사외이사가 반대/수정의견을 제시한 기업의 비율 (그룹별 비교)

(단위: %)

	2017	2018	2019
2조 이상 의무 도입	9.91%	7.69%	9.68%
2조 미만 자율 도입	7.84%	6.67%	4.17%
2조 미만 미도입	0.77%	0.77%	1.35%

* 연중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혹은 수정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1건 이상 존재하는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그룹의 전체 기업 중 해당 기업의 비율을 산출하였음

결론

- 최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자율 도입 기업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기업의 비중이 최근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 또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임
 -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에 따른 사후적인 실효성 또한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 그러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함
 -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 미충족 상태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 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 및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또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를 배제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주총회 특징 및 안건 분석

이수원 *

- ▶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장된 리츠도 최근 13사로 크게 증가함
- ▶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므로 지배구조나 주주총회 관행 역시 여타 상장회사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 ▶ 리츠의 배당 수준은 배당수익률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근임직원을 두지 않는 특성을 반영한 안건 판단이 필요함
- ▶ 리츠에만 상정되는 사업계획 승인, 차입계획 승인, 특수관계자 거래 승인 등의 배경을 이해하고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함

배경

- 최근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이하 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장 리츠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상장된 리츠는 4사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말에는 13사로 3배가량 증가함
 - 같은 기간 리츠 1사당 운용자산 규모 역시 2017년 750억원에서 2020년 4,4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그림 1] 국내 상장리츠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 KCGS 사업본부 책임투자팀 선임연구원, 02-6951-3851, hswlee@cgs.or.kr

- 리츠도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운영에서 여타 상장회사와 다른 모습을 보임
- 이에 리츠 주주총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할 때 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리츠 주주총회의 특징

- **(분석대상)** 현재 상장된 리츠 중 2020년 중 상장되어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3사¹⁾를 제외한 10사의 주주총회를 분석대상으로 함
- 10사는 2020년 중 총 20건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주주총회 유형별로 구분하면 정기주주총회 14회, 임시주주총회 6회임
- 리츠의 유형별로는 위탁관리리츠가 6사로 가장 많고, 자기관리리츠 3사 기업구조조정리츠 1사의 순임²⁾

〈표 1〉 분석 대상 리츠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종목코드	종목명	주주총회 개최 횟수	리츠유형
338100	NH프라임리츠	2	위탁관리리츠
330590	롯데리츠	3	위탁관리리츠
204210	모두투어리츠	2	자기관리리츠
293940	신한알파리츠	2	위탁관리리츠
140910	에이리츠	3	자기관리리츠
088260	이리츠코크렙	3	기업구조조정리츠
350520	이지스레지던스리츠	1	위탁관리리츠
334890	이지스밸류리츠	1	위탁관리리츠
348950	제이알글로벌리츠	1	위탁관리리츠
145270	케이탑리츠	2	자기관리리츠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주총회 개최 횟수)**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의 경우 통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사업연도가 6개월 단위이며, 이에 따라 1년에 정기주주총회를 2회 개최함³⁾
- 자기관리리츠는 사업연도가 1년 단위이므로 정기주주총회 역시 1년에 1회 개최함

1) 코람코에너지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2) 리츠는 투자대상, 운용형태 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참조

3)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사업연도를 6개월로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 다른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주총회 결의 사항)** 부투법은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것보다 많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업계획 확정이나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들 수 있음
 - 아래 법령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상법상 주주총회 대표적인 결의사항인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보수에 관한 승인 역시 주주총회에서 다룸
 - 따라서 리츠 주주총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안건이 상정되는 특징이 있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대상·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의2.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5.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리츠 주주총회 안건 분석

- **(재무제표 및 배당)** 리츠는 부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음
 - 또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초과배당)에 의거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100% 이내에서 초과 배당도 가능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리츠의 배당 분석에 있어 배당성향은 적절한 지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가배당률을 근거로 하여 배당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함
 - 특히 다른 리츠 대비 낮은 시가배당률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그 사유를 면밀히 살펴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시 주주권 행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임원 선임)** 자기관리리츠를 제외한 위탁관리리츠나 기업구조조정리츠의 경우 법상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임
 - 명목회사인 경우 사외이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독립성에 기초한 임원의 적절성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며, 전문성에 방점을 두어야 함
 - 다만 부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를 두고 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독이사의 역할은 사외이사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준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부투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 리츠의 감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여야 하므로, 감사 선임에 있어 전문성 문제는 불거질 가능성이 없으며, 리츠 및 리츠가 소속된 기업집단과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감사로 선임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상근임직원을 두는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여타 상장회사의 이사회와 구성이 상이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는 윤리성과 전문성, 사외이사는 독립성 요건을 더해 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함
- **(보수)** 명목회사인 리츠의 임원은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거나 보수를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⁴⁾, 자기관리리츠의 임원은 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이사회에서 각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다른 상장회사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감
- 명목회사라는 특성과 매월 소정의 보수 또는 보수 수령을 하지 않는 관행을 고려할 때,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구조조정리츠에서 주주이익과 연동되지 않는 보수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는 거의 없음
 - 보다 중요한 점은 리츠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상 보수이며, 과도하게 지급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기관리리츠는 여전히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보수 체계, 과도한 보수한도 설정으로 인한 주주권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리츠는 매 결산기마다 사업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안건에는 사업 계획의 적용기간, 해당기간의 투자부동산, 사업계획 재무요약이 제시됨
- 또한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리츠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리츠는 투자부동산에서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당 배당금을 공시함
 - 투자자는 지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주당배당금이 잘 지켜졌는지 급격한 배당금의 변동이 있지 않은지 주의해서 살펴야 함
- **(차입계획)** 리츠는 새로운 투자부동산 또는 자리츠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금 조달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부투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자자는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금리 조건을 살펴 리츠가 악화된 조건으로 차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더 높은 금리의 차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질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4) 부투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위탁 관리리츠의 이사가 될 수 없음

- **(특수관계자 거래)** 금융그룹 또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리츠의 경우 계열회사의 자산유동화에 참여하면서 여러 종류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추진함
 -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임대하는 형태의 계약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안정적인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리츠는 기업집단 내에서 소유구조 상 열위(지배주주 현금흐름권이 낮은)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다만 부투법 제30조는 리츠의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기한 우려는 제한적임
 - 만약 상장리츠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분양이나 경쟁입찰 등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외부의 추천을 받은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을 받아 매도의 경우 더 높은 금액, 매입의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결

- 최근 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상장리츠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리츠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함
 - 리츠의 주주총회와 지배구조는 대부분 부동산투자회사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우선 해당 법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여타 상장회사에서 상정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안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이 바람직함

탄소중립 시대 도래에 따른 ESG 경영

최윤라*

- ▶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음
- ▶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12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하고 있음
- ▶ 이에, 기업은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 논의 배경

- 그린스완, 기후변화의 위험
 - COVID-19로 전 세계가 마비된 가운데, 전 지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태풍, 쓰나미,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급격한 생태학적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2020년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¹⁾’ 보고서를 발간하며 다시 한 번 기후변화 위험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 세계적 이목을 끌게 됨
 -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금융 리스크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충격이 블랙스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치명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위기 예측 프로그램이 수반된 선제 대응이 강조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글로벌 의제로 부상
 -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며 각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가입하게 되며 2050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등장하게 됨

* KCGS 사업본부 ESG평가팀 선임연구원, 02-6951-3702, rarachoi@cgs.or.kr

1) Patrick BOLTON, Morgan DESPRES, Luiz Awazu PEREIRA DA SILVA, Frédéric SAMAMA, Romain SVARTZMAN (2020),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BIS.

-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양 만큼 흡수 혹은 제거하여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임
 -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산림조성,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을 활용하여 순 배출량을 0이 되게 만드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Net-Zero'라고 부르기도 함
- 탄소중립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 활동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MF, 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인 RE100²⁾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탄소중립 국내외 동향

- 유럽연합(European Union), 그린딜(Green Deal) 발표
 - 2019년 12월, 신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을 발표함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입할 예정임
 -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7%로 확대하는 정책 목표에 기반하여 에너지효율 목표를 검토하기로 함
 -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비전) 탄소중립, 신성장 전략, 공정전환(Just Transition)
 - (정책)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First mover로서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
 - (제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통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권거래제(전력·산업 등)는 2005년 대비 43% 감축, 배출권거래 비적용 분야(non-ETS sector)는 2005년 대비 30% 감축(가정·농업·수송(항공제외))
 - (에너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 탈탄소화 도입
 - (수소/배터리) 유럽연합은 특히 청정수소 개발을 강조하며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배터리 분야 성장을 전망함
 - (건물)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RE100, Renewable Energy 100%를 뜻하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것을 의미함

□ 일본, 2050 탈탄소 실현 계획 발표

- 2020년 10월,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며 첫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일본판 그린뉴딜인 ‘2050년까지 탈탄소 달성 공약’을 발표함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20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일본 탈탄소 사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구온난화가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함
-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12월 25일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계개혁, 규격 및 표준화 등 정책을 제시함
-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³⁾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³⁾
 - (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 탈탄소 사회 실현, 경제와 환경 선순환 기반의 장기성장 실현
 - (정책)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 확립(5분야 16과제)
 - (제도)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체제 확립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 (금융) TCFD의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 도입 확대 등 녹색금융 추진
 - (탄소포집) 혁신적 환경 혁신 전략 수립 및 CCUS⁴⁾ 기술의 국제적 협력 확대
 - (수소) 일본 내 공급량을 2030년 최대 3백만 톤, 2050년 2천만 톤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수소공급비용을 30엔/Nm³으로 낮추고, 2050년에 수소발전비용을 20엔/Nm³ 이하로 낮추는 계획 수립
 - (전기차/ESS)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만들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 추진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실시,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1만 엔/kWh 이하, 태양광시스템 가격 7만 엔/kWh 이하(공사비 포함)로 낮추고 축전 성능을 향상하여 실용화 도모
 - (선박) 2050년까지 선박 연료를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대체연료로 전환하고, LNG연료 선박의 고효율화 등을 통해 일본 조선 및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상수송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 수립
 - (식료/농림수산) 미생물 활동을 제어하여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술 개발 및 플라스틱 대체용 신소재를 개발할 것. 해조류 서식지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3) 에너지경제연구원, “일본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수립”,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호 (2021.1.11.), 1-3.

4)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포집·활용·저장

□ 중국, 2060 탄소중립 달성 선언

- 2020년 9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시진핑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각국이 고조하여 친환경적인 회복(Green Economy)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가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에너지 믹스 개선 등의 조치 가속화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준 탄소중립(near zero carbon emiss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의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및 목표는 아래와 같음⁵⁾
 - (비전) 2030년 탄소배출 감소세 전환, 2060년 탄소중립 실현
 - (정책)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육성분야 및 중점 추진아이템 선정(7대 분야⁶⁾)
 - (전기) 2050년 중국 최종에너지 수요의 67%가 전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발전량의 2배로 확대할 계획
 - (수소) 2050년 중국 최종에너지 수요의 12% 수준으로 수소에너지 확대 계획
 - (디지털화) 시스템 수준에서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전반적 효율 향상 추진
 - (재활용) 철강, 플라스틱과 같은 핵심 재료의 활용률 및 재활용률을 높여, 발전 및 생산에너지의 고효율화 추진

□ 미국, 바이든의 기후 에너지 환경공약

- America First 정책을 펼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했던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며 기후변화를 실재적 위기로 인식하고 다양한 친 환경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35년까지 발전분야 탄소중립,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 정부는 기후 에너지 환경공약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 및 에너지 확대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미국의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및 목표는 아래와 같음⁷⁾
 - (비전)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환경정의 구현

5) 한국기계연구원,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기계기술정책 No.101 2021.1

6) 7대 주요 분야: 재생 가능 자원 활용, 에너지효율 향상, 최종 소비 에너지의 전기화, 제로 탄소 발전 기술, 에너지 저장, 수소에너지, 디지털화 등

7) 코트라,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1-001, 2021.1

- (목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정 복귀 선언
- (수송) 100% 청정에너지와 무공해 차량 지향,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및 생산기업 인센티브 제공 공약,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이상 설치
- (발전)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패널 500만개, 풍력 터빈 6만개 설치 계획

□ 한국, 2050 탄소중립 선언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함.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11월 22일 G20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천명함
- 이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였으며, 지난해 12월 7일 개최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 및 발표하였고,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을 확정함
-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당해 연도에만 8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함
-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및 목표는 아래와 같음⁸⁾
 -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 (정책) 3대 정책방향 및 10대 과제를 수립함. 1)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3)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분산형 에너지, ESS 확대
 - (그린모빌리티) 수소/전기차, 2차전지,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친환경 선박 개발
 - (에너지효율) 건물에너지 절감, 재활용,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 추진
 - (新그린산업) 그린수소, CCUS, 화이트바이오, 저전력 반도체 육성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재정) 가치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8)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경영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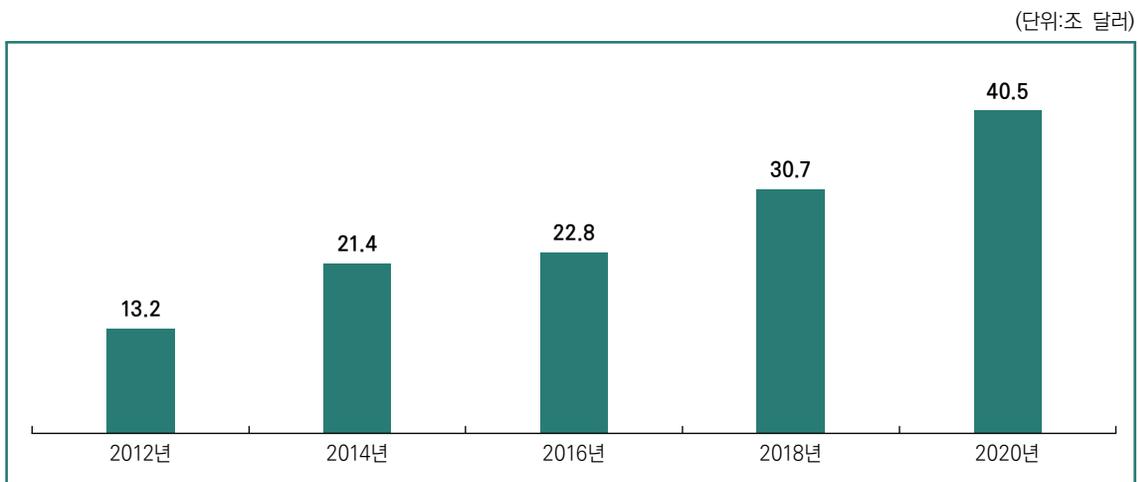
□ 산업계의 ESG돌풍

- 이제 기업은 이윤 극대화와 함께 주주, 고객,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그 성과를 '정량화'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활동 및 성과를 고려하는 경영방식으로, 기업은 재무적 성과와 ESG 경영을 연계하여 전사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갖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ESG경영 개념은 2004년 6월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개최한 '글로벌 콤팩트 리더스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ESG를 언급하면서 부상하게 된 개념이며, 유엔은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보고서에서 ESG 투자 원칙을 공식적으로 제안함⁹⁾
- 아울러,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강조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환경경영 실천 방안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글로벌 ESG 투자 확대

- OPIMAS¹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현재 전 세계 ESG 투자 자산은 40조 5천억 달러이며, 이는 2018년 30조 6천 8백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년 반 남짓한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1] 글로벌 ESG 투자 자산 추이



9) 박영석(2018), "ESG를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 기업지배구조리뷰 Vol.86, 3-27.

10) OPIMAS, "ESG data integration by asset manager: targeting alpha, fiduciary duty & portfolio risk analysis", 2020.6.17.

-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1월 연례 주주서한을 통해 투자 결정에 앞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매출액의 25% 이상을 석탄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또한 ESG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현재 기준 두 배인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 ESG 투자는 투자자본 아니라 기관 및 사모펀드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맥킨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모펀드의 임팩트 투자는 9천 8백여 개 사, 715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적 사모투자펀드인 KKR은 ‘그린포트폴리오’구성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기금과 협력을 시작함¹¹⁾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ESG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함
- ESG 경영 내의 탄소중립 이슈
- 국내 산업계에서도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탄소중립’의 전사적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산가치 및 영업의 방향성에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이제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됨
 -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정부 또한 탄소중립을 미래국가의 전략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향후 관련 규제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을 의미하며, 탄소세, 화학물질 규제 등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 질서 안에서 탄소중립 대응 여부에 따라 기업 및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이 바뀔 수 있음
 -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 ESG경영의 중요성은 국내 산업계에서도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환경의 경우, 단순히 환경법규 및 요구사항 준수를 넘어선 ‘탄소중립’을 요구받고 있음
 - (철강)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ESG 전담 조직을 CEO 직속 기업시민실 하에 신설하고 ESG 리스크 분석 및 전략 수립을 통하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시아 철강기업 중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1) 이용진, “[경영칼럼] 기관도 사모펀드도 반했다 거부할 수 없는 ESG 매력”, 매일경제, 2020.12.21.

탄소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¹²⁾

- (전자) LG전자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탄소중립 2030'을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 생산공정에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설비와 온실가스 감축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CDM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임¹³⁾
- (IT) 네이버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하는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사옥 운영 상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¹⁴⁾
- (금융) 각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 및 탈석탄 금융 등을 발표하며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¹⁵⁾
 - 신한금융그룹은 '제로카본 드라이브' 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기업과 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줄이면서 친환경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움
 - 우리금융그룹 또한 '2050 탄소중립 금융그룹'을 선포하며 자회사들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PF 참여 및 채권 인수 등을 중단하고 기존에 투자된 관련 자산도 리파이낸싱 시점에 가능한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KB금융그룹은 가장 먼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계열사 모두가 탈석탄 금융에 참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PF 및 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며 환경 관련 민간 투자 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선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하나금융그룹 또한 ESG 경영을 최우선 패러다임으로 삼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 중장기 목표를 재설정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강화,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도입,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분류체계 정비, TCFD 가이드라인 도입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음

12) 포스코, 포스코,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저탄소사회 선도, 보도자료, 2020.12.11

13) 엘지전자, <https://www.lge.co.kr/lgekor/company/sustainability/energy.do>

14) 네이버, 2020 NAVER TCFD보고서

15) 에너지경제, [2021 대전환] "탄소배출 안돼"...'ESG경영' 뜨자 바뀌는 금융그룹, 2021.1.1

시사점

- 탄소중립 시대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전 세계적 흐름인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하며 기업의 ESG 경영 강화 및 친환경 투자는 필수적 경영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에서 '탄소중립'은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탄소와 관련된 국제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기업 역량을 시험하는 기준이 될 것
 - 이에,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제한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이 다가오는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의 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힘입어 미래산업 투자에 대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힘써야 함

Global News

1. 美 나스닥, 상장사 이사회 다양성 의무화 규정 제출

- 2020년 12월, 나스닥(Nasdaq)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에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된 상장규정의 도입을 제안¹⁾함
 - 제안에 따르면 나스닥은 SEC의 승인 후 모든 상장사는 이사회 수준의 다양성 통계를 공시해야 하며, 최대 4년 이내에는 다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를 통해 나스닥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의 변화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성 제도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인 제안 규정을 살펴보면, 나스닥은 모든 상장사에 최소 1명의 여성이사와 최소 1명의 소수계층²⁾ 또는 성소수자(LGBTQ) 선임을 요구하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사유를 설명(explain)하여 공시할 것을 규정함. 단, 소규모 기업이거나 외국 기업일 경우 2명의 여성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요건 충족이 가능함
 - 나스닥이 최근 6개월간 상장사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³⁾, 전체의 75% 정도가 새로운 제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2,500여개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이사회 다양성 통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다양성 매트릭스(Board Diversity Matrix)라는 공시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안된 규정 승인 후 1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함

〈표 1〉 이사회 다양성 매트릭스

이사회 규모:				
전체 이사의 수	#			
성별:	남성	여성	Non-Binary	성별 미공개
성 정체성 기반한 이사의 수	#	#	#	#
하단 분류에 따른 이사의 수: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흑인	#	#	#	#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아메리칸 인디언	#	#	#	#
아시아인	#	#	#	#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	#	#	#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	#	#	#	#
백인	#	#	#	#
성 소수자(LGBTQ+)	#			
미공개	#			

출처: Nasdaq

1) Nasdaq to Advance Diversity through New Proposed Listing Requirements, Nasdaq, 2020.12.1.
 2) 소수계층이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등 관련 그룹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함
 3) The New York Times, "Nasdaq Pushes for Diversity in the Boardroom", 2020.12.1

- 이사회 다양성과 관련해 해외의 경우 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정부 및 규제기관의 제도화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음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2018년 여성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⁴⁾하였으며, 지난 1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진에 최소 한 명의 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공개(IPO)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음⁵⁾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9월 주 내 본사를 둔 상장사의 이사회 의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소수계층 구성원을 둘 것을 제도화⁶⁾하였으며, 독일 연립정부는 지난 1월 직원 수가 2,000명 이상이고 3명 이상의 이사회를 둔 상장사의 경우 여성 임원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함⁷⁾
 - 국내의 경우, 이사회 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조항(자본시장법 제165조20)이 신설되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함. 다만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여성이사가 없는 상장사는 2022년 8월까지 다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나스닥 최고경영자인 Adena Friedman은 해당 제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장사의 이사회 구성 및 다양성 철학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최적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아닌, 모든 이사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다양성”임을 강조함
 - SEC은 지난 1월 8일에 이사회 다양성 제안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4) The Wall Street Journal, “BlackRock: Companies Should Have at Least Two Female Directors”, 2018.2.2.

5) Goldman Sachs’ Commitment to Board Diversity, Goldman Sachs, 2020.2.4.

6) CNN, “California will now require more diversity on company boards”, 2020.10.1

7) Reuters, “German cabinet agrees quota for women on company boards”, 2021.1.6.

2. SASB, IFRS재단의 지속가능경영보고 협의문서에 대한 답변서 발표

- 2020년 12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는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재단)이 9월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협의문서¹⁾에 대한 답변서²⁾를 발표함
 - IFRS 재단의 협의문서는 향후 재단이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하여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구상을 정리한 문서로 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의 단일화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SSB) 창설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기존 유관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별 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힘³⁾
 - SASB는 IFRS 재단의 국제회계기준 제정경험과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배구조가 지속가능경영 보고기준에 관한 권위와 정당성을 수립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라면서 SSB의 창설을 지지함

- SASB에 따르면 지속가능경영 보고에 대한 국제기준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의해 제정되어 이미 많은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가능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데이터는 투자자가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데이터는 공적·사적 투자를 포함한 전체 투자 가능 유니버스를 통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및 가치 창출과의 연관성이 떨어짐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와 기타 재무자본제공자(Providers of financial capital)⁴⁾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재무보고' 국제기준이 필요하며 SSB가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함

- SSB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재무자본제공자의 니즈 해결을 위해 전념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목적에 맞는 이사회 구성 및 기준 개발 과정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구들의 기존 작업과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함
 - 지난 9월, SASB와 GRI 등 총 5개의 기준제정기구가 함께 발표한 '통합적 기업 보고를 위한 협력 성명서'⁵⁾에서 기존 기구의 기준 및 프레임워크의 조합은 통합적인 기업 보고 체계의 일부로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일관성 있는,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한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1) Consultation Paper on Sustainability Reporting, IFRS, 2020. 9.

2) SASB's Response to the IFRS Foundations's Consultation Paper on Sustainability Reporting, SASB, 2020.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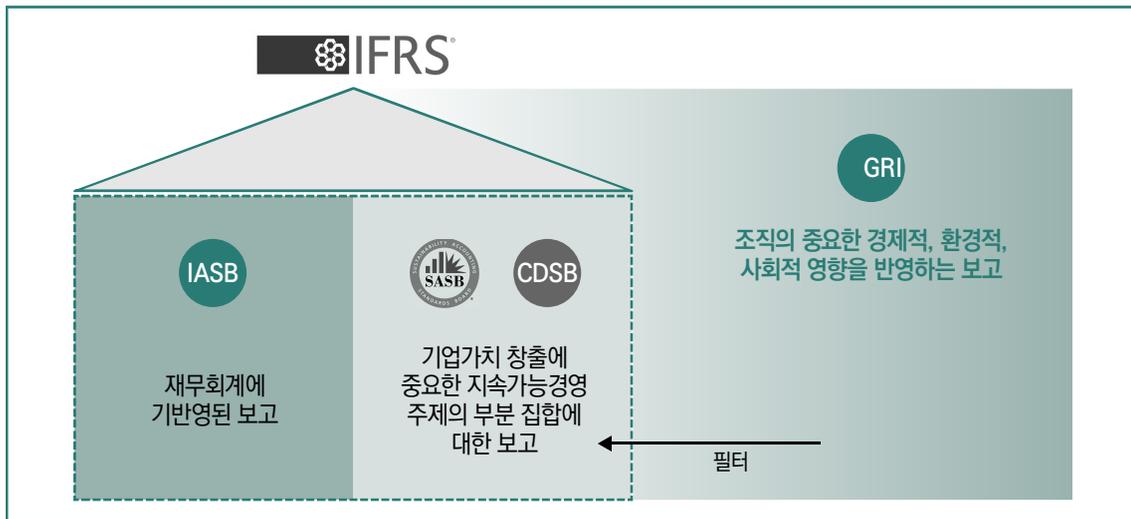
3) IFRS 재단의 지속가능경영보고 협의문서 발표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2020.10.8

4) 현재 및 향후 재무자본을 제공하는 주식 및 부채보유자, 대출기관, 기타 채권자 등. 최종 투자 수혜자, 공동자산 소유자, 자산 및 펀드 매니저 또한 포함됨, 국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한국어판, IIRC, 2015.1

5)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CDP, CDSB, GRI, IIRC, SASB, 2020.9

- 따라서, IFRS 재단이 기존의 기준과 프레임워크를 구성요소로 활용한다면 자본시장이 긴급히 요구하고 있는 통합적 기업 보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다음 그림에서 ‘집 내부 영역’은 기업가치 창출에 중요한 정보 공개를 위한 일관된 체계를 나타냄. 이는 곧 IFRS 재단이 기존 유관기구의 작업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 (그림 1 참조)

[그림 1] 통합적 기업 보고 체계



출처:SASB

- 또한 IFRS 재단이 제안한 ‘기후 우선(climate-first)’ 접근과 관련하여, SASB는 ESG 각 요소의 상호관계가 고려된 통합솔루션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와 기후 관련 보고의 긴급성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함
- SASB가 자본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재무보고 국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
 - 산업별 기준 개발 및 유지관리
 - 정량적 측정기준을 포함한 기준 개발 및 유지관리
 - TCFD 권고사항 및 SASB 기준과 같이 투자자 그룹에 널리 받아들여진 기존의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 및 기준 활용
 - SASB 등 기존의 지속가능경영기준 제정기구와의 관계 및 전문지식 활용
 - 고품질의 국제 기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펀딩 모델 구축
 - 지속가능경영 전문지식과 기준 제정경험을 갖춘 투자자 및 준비기구의 SASB에 대한 유의적인 대표성 보장
 - 복수의 이해관계자에 초점을 맞춘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수립

3. 코로나 시대의 주주총회 형태

- 미국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주를 제외하고 온라인(또는 대면 동시 개최) 주주총회를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3월과 4월에 관련 지침을 발표함
- 주주총회의 가장 적합한 형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해당 요소들을 평가하고 회사와 주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함
 - 가용 자원, 의결해야 하는 안건의 성격, 주주의 구성, 과거 참석률, 신기술에 대한 수용 수준
- SEC는 3가지의 주주총회 형태를 제시하였음
 - 대면(In-Person)
 - 실제 장소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주주총회로서 등록된 주주들이 직접 참석해 의결에 참여
 - 질의응답 세션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표준 관행이며, 언론이 참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음
 - 주주가 비주주인 사람을 '게스트'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도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오디오 또는 비디오 포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주주와 비주주는 검증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는 없음
 - 가상(Virtual Shareholder Meeting)
 - 인터넷(오디오 또는 비디오)을 통해 직접 참석할 수는 없는 회의
 - 등록된 주주들은 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가상 플랫폼을 통해 투표할 수 있음
 - 기존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은 표준 관행이지만 등록된 주주 참석자만이 회의 전이나 회의 중, 서면으로만 질문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가 아닌 '게스트'의 참석도 허용하고 있으나, 정족수에 포함 시키지 않음
 - 하이브리드(Hybrid)
 - 주주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가상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주주총회
 - 대면 주주총회의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과 달리, 직접 참석하거나 원격으로 참석하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중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질문할 수 있음

- 대면 및 원격 주주 참여자들을 수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미팅은 현재까지 드물었음
 - 일부 투자자들은 하이브리드 주주총회가 주주총회의 최적 형태라고 주장함
- 주주총회 형태에 대한 주주와 회사의 시각
- 기관투자자들은 원격 주주총회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사회에 직접 의사표현을 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하게 반대함
 - 원격 주주총회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사회와 경영진을 주주로부터 보호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주의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 2020년도의 원격 주주총회는 상호 작용과 토론의 기회가 거의 없어 기존의 주주총회를 대체하기에 완전히 부적절한 것임을 확인시킴
 - 회사가 경험한 원격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장단점을 지님
 - 주주들의 참여는 늘고 실수는 미미하였으며, 비용이 낮게 들고, 주주들의 질문 수준이 높아짐
 - 그러나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관리하는 데 준비 과정과 연습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했음
-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보다 저렴하게 보급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원격 주주총회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음

KCGS Report 제11권 2호

발행일 : 2021년 2월 28일

발행인 : 신진영

발행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다 00026
